

부속서 I
현행조치를 위한 유보와 자유화 약속
(제10장, 제11장)

부속서 I

1. 일방 당사국의 유보리스트는 제10.9조 및 제11.5조에 따라 다음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진 유보사항을 규정한다.
 - 가. 제10.3조 또는 제11.3조(내국민대우)
 - 나. 제11.4조(현지주재)
 - 다. 제10.7조(이행요건)
 - 라. 제10.8조(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2. 각 유보사항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나 국내산업분류표에 따른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유엔상품분류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지칭한다.
 - 마. **현행조치**는 유보가 이루어진 법, 규정 또는 기타 조치를 지칭한다. 현행조치에 명시된 조치는 (1)협정 발효일 현재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조치를 의미하며, (2)동 조치와 합치하며 관련기관에 의해 도입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 바. **유보내용**은 유보가 이루어진 기존 조치가 합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을 규정한다.
 - 사. **폐지계획**은 협정발효일 이후의 자유화 약속을 규정한다.
3.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사항이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 가. 폐지계획이 조치의 불합치 측면의 폐지를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폐지계획은 다른 사항보다 우선한다.
 - 나. 현행조치와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다른 사항들 사이에 총체적 비합치가 실질적이고 중요하여 현행조치가 우선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조치는 다른 사항들보다 우선한다. 현행조치가 우선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경우, 불합치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항들이 우선한다.
4.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서비스공급자가 자국민, 영주자 또는 거주자일 것을 필요로 하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제11.3조와 제11.4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내에서 제10.3조와 제10.7조와 관련된 유보에도 적용된다.

5. 이 부속서의 조치들은 부속서 Ⅱ가 그 조치나 조치의 일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래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유엔상품분류는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번, “1991 잠정중앙상품분류”에 규정된 중앙상품분류번호를 말한다.

부속서 I

칠레의 유보리스트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법령: 국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관련규범 제1편(법률 1939호, 1977.11.10자 관보)
외무부법률 제4호(1967.11.10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칠레가 국가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기타 다른 권리를 처분할 때는 법률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레 국적의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할 수 있다. 국가소유 토지라 함은 국경으로부터 10킬로미터,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외무부법률 1967년 4호에 의해 ‘국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유형의 부동산은 인접국 국민, 주요 사업장이 인접국에 존재하는 법인, 자본의 40퍼센트 이상이 그러한 자연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실제적 통제가 그러한 자연인의 권한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소유권 또는 기타 다른 권리로 취득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면제하는 경우 상기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노동사회보장부법률 제1호(1994.1.24자 관보), 노동법 서문,
제1권, 제3장
노동사회보장부법률 제2호 제5조c항(1967.10.29자 관보)
민법 제16조 3항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동일한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85퍼센트는 칠레인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용계약을 통해 2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적용된다. 국내 인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전문 기술인력은 노동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칠레 영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대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이 규정하는 의무 및 적용될 수 있는 처벌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상기 대리인은 법적인 감독을 허용하고 상기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공제, 신고 또는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모든 노동 및 사회보장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책임을 진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자동차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이행요건(제10.7조)
- 현행법령: 자동차산업관련법체제(법률 18483호, 1985.12.28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법률 제18483호에 의해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위원회에 등록하고, 동 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 국산부품사용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사회과학 조사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51 과학기술상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법률 17288호 제5편(1970.2.4자 관보)
교육부령 제484호(1991.4.2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발굴, 조사, 탐사 또는 인류학적, 고고학적 또는 고대학적 물질의 수집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 또는 자연인은 국가유적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얻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신뢰할수 있는 외국 연구기관에 속하고, 칠레의 국립연구기관이나 칠레의 대학과 공동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상기 허가는 적절하게 공인된 고고학, 인류학 또는 고대학 분야의 학술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계획과 적절한 기관의 후원이 있는 칠레의 연구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속하고, 칠레의 국립연구기관이나 칠레의 대학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연구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국가유적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박물관 관리자, 전문 고고학자, 인류학자, 고대학자, 칠레 고고학단체 회원은 구난 관련 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구난은 임박한 손실위험이 있는 자료 또는 고고학적, 인류학적 또는 고대학적 유물이나 품종에 대한 긴급한 복구를 포함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연구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51 자연과학, 기술분야의 조사 및 실험개발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53 여러 분야에 걸친 조사 및 실험개발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5 관련 과학기술 상담 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외무부법률 제11호(1968.12.5자 관보)
외무부령 제559호(1968.1.24자 관보)
외무부법률 제83호(1979.3.27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외국법인이나 해외거주 자연인을 대리하여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를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거나 칠레 국경주변지역에서의 등산과 관련된 자연인은 해당국가의 칠레 영사를 통해 적절한 허가를 신청한다. 칠레 영사는 그러한 신청을 직접 외무부 국경국에 송부한다.

국경국은 수행하는 연구를 알기 위해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한명 이상의 칠레인이 탐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외무부 국경국의 운영부서는 칠레내에 있는 외국법인이나 자연인이 수행하는 지리적·과학적 탐사의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공표한다. 외무부 국경국은 해외거주 외국법인이나 자연인이 칠레 국경주변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학적·기술적 성격 또는 등산과 관련된 모든 탐사를 허가하고 감독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연구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51 자연과학, 기술분야의 조사 및 실험개발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53 여러 분야에 걸친 조사 및 실험개발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2 어업에 부수하는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국방부령 제711호(1975.10.15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 200해리 해역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조사 6개월 전에 조사신청서를 칠
레 해군 수로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기본 국내 또는 국제 장거리통신서비스 및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와 제한적 통신 서비스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법령: 일반통신법 제1편, 2편, 3편(법률 18168호, 1982.10.2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칠레 영역내에서 공중통신서비스, 별정통신 서비스를 설치, 운영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부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가는 칠레 국내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된 자만이 받을 수 있다.

공중망에 기자재를 접속함으로써 제공되는 추가적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담당 차관이 발표하는 공식 결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공식 결정은 전기통신담당 차관이 정하는 기술적 표준 및 망의 기본적인 기술적 특성 또는 망을 통해 제공되는 허용기술이나 기본 서비스 방식의 변형금지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제한적 통신서비스를 설치, 운영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담당 차관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다.

국제통신트래픽은 교통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설비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 11.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1.8조)
이행요건(제11.7조)
- 현행법령: 국립텔레비전위원회 제1편, 제2편, 제3편(법률 18838호, 1989.9.30자 관보)
일반통신법 제1편, 제2편, 제3편(법률 18168호, 1982.10.2자 관보)
언론과정보의자유및언론의행사관련법 제1편, 제3편(법률 19733호, 2001.6.4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영상전송매체와 같은 사회보도매체와 국가통신사의 소유자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칠레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칠레내에 주소를 가지고 설립되거나 국내 운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오직 칠레인만이 상기 법인의 사장, 관리자 및 법적 대표가 될 수 있다. 공영라디오방송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는 법인이 공영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칠레인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허용된다.

국립텔레비전 위원회는 공영텔레비전 채널의 40퍼센트까지 칠레제작물이어야 한다는 편성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칠레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칠레 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라디오방송통신사업자로서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가될 수 있으며, 칠레인만이 당해 법인의 사장, 관리자 또는 법적 대표가 될 수 있다.

칠레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칠레 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유선방송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송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가될 수 있으며, 칠레인만이 당해 법인의 사장, 관리자 또는 법적 대표가 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에너지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2 원유 및 천연가스
유엔상품분류 13 우라늄과 토륨광물
유엔상품분류 14 금속광물
유엔상품분류 16 기타광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의무(제10.7조)
- 현행법령: 칠레헌법 제3장
채굴권에대한헌법기관법 제1편, 2편, 3편(법률 제18097호, 1982.1.21자 관보)
광산법 제1편, 2편(법률 제18248호, 1983.10.14자 관보)
칠레원자력위원회설치규정 제1편, 2편, 3편(법률 제16319호, 1965.10.23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국가 관할 해역내에 있거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법률로서만 분류할 수 있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처리는 칠레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및 요구조건에 따른 행정허가 또는 특정 운영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리라는 용어는 상기 에너지 광물에 대한 저장, 운송 및 정제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생산은 오직 칠레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제3자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어업
- 하위분야: 양식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4 어류와 다른 어획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법령: 일반어류및양식법 제1편, 4편(법률 제18892호, 1992.1.21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양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변, 해변 인접지역, 해양, 해저의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칠레인이나 칠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만이 양식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어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4 어류와 다른 어획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법령: 해양수산업 제1편, 3편, 4편, 9편(법률 제18892호, 1992.1.21자
관보)
항해법 제1편, 2편(법률 2222호, 1978.5.31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연근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수확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칠레인이나 칠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만이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수확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칠레 선박만이 연근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이 허가된다. 칠레선박은 선박법에 의해 정의된 선박이다. 산업적인 어획활동이용권은 사전에 칠레에서 선박 등록이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칠레인이나 칠레 법인만이 칠레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칠레법인은 칠레내에 주된 주소와 실제의 유효한 사업장을 가지고 칠레내에 설립되어야 하고, 사장, 관리자 및 이사 또는 관리자의 과반수가 칠레의 자연인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 자본의 50퍼센트 이상이 칠레인이나 칠레 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선박을 소유한 다른 법인의 소유권을 가진 법인은 전술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자의 과반수가 칠레에 주소와 거소를 가진 칠레인인 경우 합작사는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경영진은 칠레인이어야 하며 공동소유권의 과반수가 칠레인이나 칠레 법인에 속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선박을 소유한 합작사의 소유지분을 가진 법인은 전술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991년6월30일 이전에 칠레에 어선을 등록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전술한 국적요구조건에 따르지 않는다.

다른 국가가 칠레 선박에 부여한 상호주의에 의해 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운관청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어선들은, 동 국가들에서 칠레선박에 제공한 것과 동등한 조건에 따라 위의 요건들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소규모 어획활동은 영세수산업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소규모 어획활동의 등록은 칠레의 자연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또는 전술한 인원으로 구성된 칠레 법인에 한하여 허용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광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3 우라늄과 토륨광물
유엔상품분류 14 금속광물
유엔상품분류 16 기타광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의무(제10.7조)
- 현행법령: 칠레헌법 제3장
채굴권에대한헌법기관법 제1편, 2편, 3편(법률 제18097호, 1982.1.21자 관보)
광산법 제1편, 3편(법률 제18248호, 1983.10.14자 관보)
칠레원자력위원회설치규정 제1편, 2편, 3편(법률 제16319호, 1965.10.23자 관보)
- 유보내용: 투자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것으로서 토륨과 우라늄이 상당량 있는 광산물에 대해 국가는 관행적인 시장가격과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입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생산된 광산물에 승인될 수 없는 물질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그 물질이 국가를 대신한 수송 및 판매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이를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제적·기술적 분리라 함은 정상적인 기술 공정에 의한 관련 물질의 회수와 판매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이 그 물질의 상업적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 관할 해역내 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그 분류가 법률로만 가능한 모든 종류의 리튬에 대해 그 탐사, 개발 및 처리는 칠레 대통령이 개별사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및 요구조건에 따른 행정허가 또는 특정 운영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칠레 원자력위원회가 단독으로 또는 동 위원회와 합작하여 또는 사전허가를 얻어, 수행 또는 진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 원자력 물질 및 추출된 리튬과 그 농축물, 부산물, 합성물은 어떠한 종류의 법적 행위의 대상도 아니다. 동 위원회가 그러한 허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인쇄, 출판 및 기타관련 산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1.8조)
- 현행법령: 언론과표현의자유및언론의행사관련법 제1편, 제3편(법률 19733호, 2001.6.4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발행주소가 칠레내인 신문,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과 같은 사회보도매체나 국가통신사의 소유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칠레내에 적절히 확립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칠레내에 주소를 가지고 설립되거나 국내 운영권한을 보유한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칠레인만이 상기 법인의 사장, 관리자, 법적 대표가 될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대리인은 칠레내에 거주하는 칠레인이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술자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5 과학 및 기술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법률 제12851호 제2편(1958.2.6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 및 기술자는 칠레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되었을 경우 당해 업종 관련 협회의 특별명부에 등록하고 동 협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며 그러한 협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률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법원조직법 제15편
법무부령 제110호(1979.3.20자 관보)
법률 제18120호(1982.5.18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 자연인만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칠레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제소 또는 청구는 개업할 정당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문서는 변호사만이 작성해야 한다. 회사의 정관 및 그 변경, 상호 채무면제 또는 청산; 부부간 공유재산의 청산; 재산분배; 법인·수로협회·협동조합의 정관, 금융거래계약 및 사채발행계약; 회사와 재단의 법률행위 대리 신청.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 기술 및 특수서비스
- 하위분야: 법률보조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률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법원조직법 제11, 12편
부동산관리등록규칙 제1편, 2편, 3편
법률 제18118호 제1편(1982.5.22자 관보)
경제부령 제197호(1985.8.8자 관보)
법률 제18175호 제3편(1982.10.28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법률보조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주소지가 있는 동일한 도시나 지역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변호인, 공증인 및 후견인은 칠레인이어야 하며, 판사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보관인과 중재인은 변호사이어야 하고, 따라서 칠레인이어야 한다.

선거권을 가진 칠레인과 영주자격 및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만이 송달인 및 고등법원 판사보로 활동할 수 있다.

칠레인, 칠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또는 칠레 법인만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대학 또는 칠레정부가 승인한 전문·기술학원이 수여한 전문·기술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상사, 경제 또는 법률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법무부의 정당한 인가를 받아 거소지에 서만 활동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 기술 및 특화서비스
- 하위분야: 전문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211 재무회계감사 서비스(재무회계감사 또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주식회사법 제5편(법률 18046호, 1981.10.22자 관보)
주식회사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587호, 1982.11.13자 관보)
법률 제1097호, 제1편, 2편, 3편, 4편(1975.7.25자 관보)
법률 제3538호, 제1편, 2편, 3편, 4편(1980.12.23자 관보)
회람 제2714호(1992.10.6), 회람 제1호(1989.1.17), 외부감사에
관한은행및금융기관감독국규범 제19장
증권보험감독국관련 회람 제327호(1983.6.29), 회람 제350(1983.10.21)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기관의 외부 감사인들은 은행·금융기관 감독기관 및
가치·신용 감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감사인 장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파트너십 또는 기업연합 형태로 합법적으
로 설립되고 주된 사업이 감사서비스인 기업만이 장부에 등
록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특별서비스
- 하위분야: 관세사 및 중개사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8 화물운송주선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9 기타 운송서비스 및 운송보조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재무부법률 제30호 제4권(1983.4.13자 관보)
재무부법률 제2호(1998년)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칠레인만이 관세사 및 중개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특별서비스
- 하위분야: 사설무장경호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73 조사 및 보안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내무부령 제1773호(1994.11.14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 자연인만이 사설무장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스포츠, 산업적 낚시·사냥 및 레크리에이션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1 농업, 사냥, 임업 관련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2 어업 관련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499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법률 제17798호 제1편(1972.10.21자 관보)
국방부령 제77호(1982.4.29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총포, 폭발물 또는 유사한 물질을 소유하는 자는 해당 주소지의 적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방부 국가동원총국에 하여야 한다.

불꽃놀이 재료의 수입자로 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가동원총국 제3과에 칠레로의 수입 및 반입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여 하며, 불꽃놀이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동 물질의 재고를 보관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불꽃놀이의 설치, 진행, 안전조치에 관한 보고가 있고, 이를 국가동원총국의 등재부에 등록된 불꽃놀이 시연자나 동 총국에 의해 공인된 전문가가 서명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불꽃놀이를 허가한다.

불꽃놀이의 생산과 실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1인의 국가동원총국에 등록된 불꽃놀이 전문가가 입회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항공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34 조정사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69 기타 보조적인 항공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조치: 항공법 서문 제2편, 3편(법률 제18916호, 1990.2.8자 관보)
상업적비행관련규범(법률 제2564호, 1979.6.22자 관보)
국방부령 제624호(1995.1.5자 관보)
법률 제16752호 제2편(1968.2.17자 관보)
국방부령 제34호(1968.2.10자 관보)
교통통신부령 제102호(1981.6.17자 관보)
국방부령 제172호(1974.3.5자 관보)
국방부령 제37호(1991.12.10자 관보)
국방부령 제234호(1971.6.19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의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칠레내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칠레내에 설립되어야 하고 주된 주소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장을 칠레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소유권 지분의 과반수를 칠레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다시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장, 경영자 그리고 이사 또는 관리자의 과반수는 칠레의 자연인이어야 한다.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의 등록된 항공기는 민간항공국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칠레에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상 칠레내에 체재할 수 없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는 글라이더 예인서비스와 낙하산 낙하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제11조제1항에서 정의한 특수항공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칠레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항공종사원은 먼저 칠레 면허와 관련 의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의 항공종사원은 제3국에 의해 부여된 면허 또는 자격의 유효성을 칠레의 항공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칠레에서 그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동 인정을 규정하는 국제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은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면허 또는 자격이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관련 당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인증되었고, 현재 유효하며, 발행 또는 인정요건이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칠레에서 요구되는 표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항공운송서비스는 그 운항노선에서 외국이 칠레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유사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칠레 또는 외국 항공사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민간항공위원회는 해당 국가에서 칠레 항공사 및 항공기의 동일한 대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칠레 영역내에서 외국 항공사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국내항공서비스 또는 다른 종류의 상업적 항공운송서비스를 실행 결의의 방법으로 종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상업적 운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의 민간항공기와 비정기 상업적 운송기가 칠레의 영해를 포함한 칠레 영역에 진입하여 영공을 통과하고 비상업 목적으로 기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민간항공총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상업적 항공기는 칠레항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칠레 영역내에서 여객, 화물 또는 우편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육상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2 기타 육상운송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 현행법령: 법률 18290호 제4편(1984.2.7자 관보)
외무부령 제485호(1960.9.7자 관보), 제네바협정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외국 번호판을 달고 칠레에 들어와 임시로 운행되는 차량들은 1949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도로교통협약”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 동안 칠레 영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다만 이 경우, 칠레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네바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확인서의 소지자들은 칠레 영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외국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관계당국의 요구시 면허소지자의 운전을 승인하는 서류와 자동차가 정당하게 운행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육상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2 기타 육상운송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법령: 교통통신부령 제212호(1992.11.21자 관보)
교통통신부령 제163호(1985.1.4자 관보)
외무부령 제257호(1991.10.17자 관보)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육상운송서비스의 제공자는 교통통신부 지방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는 도시지역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의 지역대표에게로, 농촌지역 서비스 및 도시간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가 주재하는 지역의 지역대표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자세히 제시되어야 하며 그 중 특히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가주민등록 카드의 공증된 사본,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적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그러한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칠레 영역내에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외국 국적의 자연인과 법인은, 칠레 영토 내에서 지역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들의 법률에 의거하여 실제의 유효한 주소를 갖춘 법인에 한하여 칠레와 그 국가간 국제육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나아가, 외국 법인이 국제육상운송 서비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유효한 경영권의 절반 이상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국민이 소유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해상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21 해상운송 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22 화물운송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법령: 상업선박장려법 제1편, 2편(법령 제3059호, 1979.12.22자 관보)
동법시행규칙 제1편, 2편(법령 제24호, 1986.3.10자 관보)
항해법 제1편, 2편, 3편, 4편, 5편(법령 제2222호, 1978.5.31자 관보)
해양하천호수관련인력의등록에관한일반규정(법령 제153호, 1966.3.11자 관보)
상법 제3권 제1편, 4편, 5편
법률 제19420호(1995.10.23자 관보), 아리카지방과 파리나코타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한 혜택을 설정하고 동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규들을 수정함.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 국민이나 법인만이 칠레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칠레에 주된 주소와 실제의 유효한 사무소를 갖추고 설립되고, 그 사장, 경영자 그리고 이사 또는 관리자의 과반수가 칠레인이어야 한다.

또한 법인 자본의 50퍼센트 이상은 칠레국민 또는 칠레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전술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선박 공동소유시 그 공동소유자의 과반수가 칠레에 주소와 거주지를 둔 칠레인인 경우 선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칠레인이고 공동소유권의 과반수가 칠레 자연인 또는 칠레 법인에 속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박의 공동소유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칠레인으로 간주되기 위한 전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칠레에 주소를 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해 소유된 특별선박은 일정 조건하에 칠레에 등록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선박은 어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칠레에 주소를 두고, 칠레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칠레에서 영구적인 방법으로 직업 및 상업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해사관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러한 선박의 운항에 있어 어떤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해사관청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선박은 해사관청이 요구할 때는 도선, 정박지, 항만도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칠레항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인 또는 다른 작업에는 칠레국기를 달고 있는 예인선만이 이용되어야 한다.

선장은 칠레인이어야 하고, 해당관청에 의해 칠레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칠레선박에 승선한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등록부에 등록된 칠레인이어야 한다. 국적선의 승무원은 칠레인이어야 하고, 해사관청에서 교부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각각의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에 의해서 부여된 직책과 면허는, 해사국장의 시행 결정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직원의 의무의 수행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박의 선장은 칠레국민이어야 한다. 선장은 자연인이며, 해사국장이 부여한 상응하는 직책에 따라 소형 선박과 일부 대형특별선박을 지휘할 수 있다.

오직 칠레인 또는 칠레에 주소를 둔 외국인만이 어선선장, 기술자, 기관운전자, 어선원, 소형어선원, 산업 또는 해사무역 기술 고용인 또는 작업인로서 근무가 승인되고, 선박운항자가 활동의 최초 편성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는 모선이나 어선에 산업 또는 일반 서비스 승무원으로 근무가 승인된다.

칠레국기를 달기 위해서는, 선박의 선장, 선박직원과 승무원이 칠레인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고용이 필수적일 때는 실행 결의에 의거하여 해사 해상국장이 임시로 그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항상 선장은 칠레인이어야 한다. 오직 칠레국민이나 칠레법인만이 칠레에서 복합운송업자로서 일하는 것이 인정된다.

연안해운은 칠레선박에 유보된다. 연안해운은 여객과 화물을 해양, 강, 호수에서 칠레국 내의 다른 지점사이 및 그 지점과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해군구조물 사이를 운송하는 것이다

외국국적 상선은, 하주가 적절히 예상하여 소집한 공개입찰 이전에 화물량이 900톤을 초과할 때는 연안해운에 참여할 수 있다. 포함된 화물량이 900톤 이하이고 칠레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없을 때는 해사관청은 외국 상선에 화물의 적재를 승인한다. 칠레선박에 대한 연안해운의 유보는 아리카 지방에 있는 항만으로 가거나 오는 화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칠레가 상호주의에 의하여 칠레와 제3국간의 국제화물운송에 적용하는 화물유보조치를 채택해야 하는 경우, 유보된 화물은 칠레 국적선이나 그러한 선박으로 간주되는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해상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21 해상운송 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22 화물운송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법령: 상법 제3권 제1편, 4편, 5편
항해법 제1편, 2편, 4편(법률 제2222호, 1978.5.31자 관보)
노동사회보장부령 제90호(2000.1.21자 관보)
노동사회보장부령 제49호(1999.7.16자 관보)
노동법 제1권 제2편 제3장 2항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선박운항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 선주 또는 선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임을 막론하고 칠레의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연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적재작업이나 입거작업은,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당관청이 적절하게 인정하고, 칠레에 설립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칠레인에게 유보된다.

이러한 활동이 법인에 의해 실행될 때, 그 법인들은 칠레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칠레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회장, 관리자, 경영자 또는 이사는 칠레인이어야 한다. 최소한 회사자본의 절반은 칠레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회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을 지명해야 하고 그 대리인은 그들 대신 활동하고 칠레국민이어야 한다.

항만근로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기술교육기관에서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칠레의 육지나 섬의 항만을 이용하여 하역하는 자, 환적하는 자, 특히 잡은 생선의 하역이나 배에서 가공된 생선의 하역을 위해 일하는 자는 칠레인이나 칠레법인이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리스트

- 분야: 농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0113 탈곡하지 않은 벼
유엔상품분류 0115 보리
한국표준산업분류 01212 육우사육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1312 육류도매업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5931호, 1998.11.14)
- 유보내용: 투자

한국 국민만이 벼 및 보리재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예술,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
- 하위분야: 공연예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및 정기간행물 관련 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619 기타 오락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13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배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21 영화 상영서비스, 음반, 비디오 및 게임
한국표준산업분류 2212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발행 및 배포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 현행조치: 공연법 제6조(법률 제6632호, 2002.1.26)
영화진흥법 제6조, 제28조(법률 제6186호, 2000.1.21)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6296호, 1999.5.1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법률 제5658호, 1999.1.2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법률 제6473호, 1999.2.8)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북한 또는 반정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과 만화, 사진집, 화보집, 잡지 또는 소설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모든 영화관에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건축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1 건축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6503호, 2001.8.14)
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대통령령 제16808호, 2000.5.10)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5.22)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에서 발행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건축사법 시행령과 동법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엔지니어링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62 실물자산의 시험분석 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법률 제6586호, 2001.12.3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대통령령 제17329호, 2001.7.3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건설교통부령 제293호, 2001.8.13)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5조 및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산업안전 및 보건기관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5 연구 및 개발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900 기타 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3199 기타 보건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1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법률 제6104호, 2000.1.7)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산업안전 및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지정건강진단기관, 지정안전보건진단기관은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직업알선사업, 인력공급 및 근로자파견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720 인력 배치 및 공급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3조(법률 제5884호, 1999.2.8)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제37조(노동부령 제155호, 1999.10.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법률 제5512호, 1998.2.2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5828호, 1998.7.1)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인력공급 서비스, 근로자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20 제곱미터(법인의 경우 : 33 제곱미터)
2. 근로자파견 서비스: 66 제곱미터
3. 인력공급 서비스: 33 제곱미터

또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인력공급 서비스, 근로자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운영자가 없는 임대·리스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3101 운영자가 없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법률 제6655호, 2002.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건설교통부령 제316호, 2002.5.24)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 수, 사무실과 주차장의 건평을 포함한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과학조사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510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의 조사 및 탐사개발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 현행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2.5)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 관할 수역내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조사개시 6개월전에 조사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해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900 기타 교육 및 훈련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제22조, 제28조(법률 제5474호, 1997.12.24)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한국정부로부터 훈련비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용자를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그 훈련 과정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는 훈련 교사양성시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및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직업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기본통신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 통신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4110 유선통신서비스(재판매 제외)
유엔상품분류 84120 무선통신서비스(재판매 제외)
유엔상품분류 84130 위성통신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6조, 제59조의2, 부칙 제4조(법률 제6360호, 2001.1.16)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7237호, 2001.6.1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9조(법률 제5379호, 2002.1.14)
전파법 제20조(법률 제6315호, 2000.12.29)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인들은 이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허가를 얻을 수 없다.

1.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
2. 다음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소유되는 지분 또는 주식의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주식의 49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
 - 가. 외국 정부
 - 나. 외국인
 - 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
 - 라.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으로써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

다음 개인이나 법인은 한국통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한국통신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인

3.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
4.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으로써 그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대표, 외국 법인이나 기관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한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유사한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방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4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53 라디오 및 케이블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12 영화 또는 비디오 테잎 제작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방송법 제13조, 제14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법률 제6139호, 2000.1.12)
방송법시행령 제14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7156호, 2001.3.20)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전송받아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운용 채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외국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 승인 유효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까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방송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단체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편성 제외)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전송망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방송사업자는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방송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편성하여야 한다.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대에 외주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편성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을 방송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하며, 방송법에 따라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을 구성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이 아닌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대표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대표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건설
- 하위분야: 건설 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51 건설공사
- 유보유형: 이행요건(제10.7조)
현지주재(제11.4조)(유엔상품분류 5111 제외)
- 현행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0조, 제91조(법률 제6640호, 2002.1.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제33조, 제86조(대통령령 제17740호, 20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7조(건설교통부령 제332호, 2002.9.18)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법률 제6656호, 2002.2.4)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일반도급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전문하도급업자에게 당해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한다.

한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최초로 건설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건설
- 하위분야: 건설장비의 임대, 관리 및 보수, 판매 및 해체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51800 건설장비 임대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 92111 광업 및 건설업 기계·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6363호, 2001.1.16)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대통령령 제16872호, 2000.1.27)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의2, 제65조의3(건설교통부령 제290호, 2001.8.4)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건설기계임대업, 건설기계유지업, 건설기계판매업, 건설기계해체업 등 건설기계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사업목록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신고를 한 자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내에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못하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고의 절차, 신고증교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정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교육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 교육서비스
- 유보유형: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조치: 사립학교법 제21조(법률 제5345호, 1997.8.22)
- 유보내용: 투자

사립학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은 한국 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 기본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미만까지 외국인으로 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력
- 하위분야: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 송전 및 배전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7100 전력에너지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배분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5254호, 1997.1.1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7조의2(대통령령 제15687호, 1998.2.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7474호, 2001.12.31)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5조(규칙 제99-58호, 2001.3.14)
-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전력의 지분 또는 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송전, 배전 및 전력판매 사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
자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당해 사업
의 최대주주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환경서비스
- 하위분야: 대기질 모니터링 및 통제
수질 모니터링, 폐수(하수)처리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소음 진동 모니터링 및 저감
환경영향평가
유독 화학물질 처리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유엔상품분류 51330 토목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유엔상품분류 83101 운영자를 제외한 대여 및 전세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법률 제6654호, 2002.2.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제17조, 제18조(법률 제6590호, 2000.2.3)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법률 제6656호, 2002.2.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6095호, 1999.12.3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5조, 제38조(법률 제6656호, 2002.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법률 제6153호, 2000.1.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6627호, 2002.1.26)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법률 제5915호, 1999.2.8)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법률 제6226호, 2000.1.28)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에서 상기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규정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한국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가스산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2020 액체 혹은 가스상태의 천연가스
유엔상품분류 7131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또는 천연가스운송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조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9조(법률 제5379호, 1997.8.28)
- 유보내용: 투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소유의 최고비율은 총 30퍼센트이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화학제품 제조
- 하위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
- 유보유형: 이행요건(제10.7조)
- 현행조치: 약사법 제34조(법률 제4486호, 1991.12.31)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933호, 2002.11.5)
-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원료혈액물질을 공급받아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뉴스제공업
- 하위분야: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한 뉴스제공업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32300 일주일에 4회이상 발행되는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유엔상품분류 32400 일주일에 4회미만 발행되는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조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법률 제5926호, 1999.2.8)
- 유보내용: 투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자격이 없다

1. 한국 국민이 아닌 자
2.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 정부, 외국 법인이나 단체 또는 상기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행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비율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외국의 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1. 일간신문 : 30퍼센트
2. 뉴스제공업 : 25퍼센트
3. 일간신문 및 뉴스제공업을 제외한 기타 정기간행물 : 50퍼센트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기타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광고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7190 기타 광고서비스
- 유보유형: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조치: 방송법 제13조(법률 제6139호, 2000.3.13)
- 유보내용: 투자

한국 국민만이 한국의 전광판 방송사업의 대표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는 전광판 방송사업의 대표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회계, 조세, 노동관련 자문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3 조세 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0조, 제12조(법률 제5255호, 1997.1.13)
관세사법 제7조, 제9조(법률 제4984호, 1995.12.6)
공인노무사법 제5조(법률 제5887호, 1999.2.8)
세무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법률 제6778호, 2002.12.18)
변리사법 제5조, 제6조(법률 제6753호, 1999.11.12)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인노무사는 노동부장관에게, 관세사는 관세청장에게,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3 통합 엔지니어링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법률 제6535호, 2001.12.19)
기술사법 제6조(법률 6567호, 2001.12.31)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에서 발급된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부동산서비스
- 하위분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한 부동산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2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한 부동산서비스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법률 제6237호, 2001.1.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대통령령 제16814호, 2000.5.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제14조(건설교통부령 제239호, 2000.5.2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법률 제6236호, 2000.1.28)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5조(대통령령 제16837호, 2000.6.7)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건설교통부령 제250호, 2000.7.29)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에서 발급된 부동산중개사자격증 소지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도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등록사항 중에는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유 또는 사용 관련 요건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발급된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동산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의 형태로 부동산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등록 또는 승인사항 중에는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유 또는 사용 관련 요건이 포함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지원 및 보조서비스
- 하위분야: 화물운송주선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800 화물운송주선 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법률 제6731호, 2002.8.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5633호, 1998.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건설교통부령 제304호, 2001.11.30)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법률 제6364호, 2001.1.16)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2조, 제3조(대통령령 제17194호, 2001.4.9)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사항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요건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소운송업”이라 함은 대리인으로서 철도를 통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된 물품을 인도받는 행위, 철도를 통하여 운송된 물품을 모으거나 배달하는 행위, 철도를 이용한 물품 운송행위, 철도를 통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철도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행위를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철도소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철도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 시설, 장비를 포함한 등록요건은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담배제품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250 담배제품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현행조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9조(법률 제5379호, 1997.8.28)
-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총 발행 주식의 49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 폐지계획: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된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기존의 49퍼센트 제한은 2003년 3월까지 폐지된다.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항공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31, 732, 734 항공운송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현행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4조, 제132조(법률 제 6656호, 2002.2.4)
- 유보내용: 투자

항공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및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한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또한, 항공기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 모든 자는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항공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항공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특수항공서비스, 글라이더 토잉,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목, 항공 유람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25조, 제29조, 제134조(법률 제6656호, 2002.2.4)
항공법시행규칙 제298조, 제299조의2, 제302조(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9.30)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특수항공서비스, 글라이더 토잉,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목, 항공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한 가장 큰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소유 또는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등 항공법 제134조 및 건설교통부령의 관련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항공기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 모든 자는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소유한 항공기를 한국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항공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한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육상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21 기타 정기여객운송업
유엔상품분류 7122 기타 비정기여객운송업
유엔상품분류 7123 화물운송업
- 유보유형: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법률 제6655호, 2002.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17622호, 2002.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건설교통부령 제316호, 2002.5.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법률 제6731호, 2002.8.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5633호, 1998.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304호, 2001.11.30)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육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공할 운송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 사업소가 위치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속버스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운송서비스는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허락된다. 면허발급과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육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사업소가 위치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서비스 지역이 주등록지역의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지역에 운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면허발급과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항공운송지원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69 기타 항공운송지원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68 항공기정비 및 수리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항공법 제25조, 제137조(법률 제6656호, 2002.2.4)
항공법시행규칙 제304조, 제305조(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9.30)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항공기 정비, 수리 및 정밀검사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 항공법 제137조 및 건설교통부령의 관련조항의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해상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21 해상운송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5 운송지원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선박법 제2조, 제6조(법률 제5972호, 1999.4.1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6193호, 2000.1.21)
도선법 제6조, 제20조(법률 제5917호, 1999.2.8)
선원법 제104조(법률 제5973호, 1999.4.15)
선박안전법 제15조, 제16조(법률 제5971호, 1999.4.15)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 국민, 한국의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한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국 국민이 대표자인 법인에 의해 소유된 선박만이 한국에 등록될 수 있다.

연안해운은 한국선박에 유보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한반도의 통일시까지 다음을 조건으로 연안운송활동을 할 수 있다.

1. 남북한간 승객 및 화물의 운송을 포함
2. 한국 해운회사와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설립
3.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사가 될 자격이 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5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에 의해 지정된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선박의 선장은 한국 국민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한국인은 한국 선박에 승선했던 선박직원과 선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한국 선박의 선박당 6명까지 승선했을 수 있다.

한국 국민 또는 한국 법인만이 난파선박의 구조 또는 선박의 해체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 분야: 도로 운송
- 하위분야: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 매매 및 폐차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61120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68 기타 운송장비의 수리 서비스
- 유보형태: 현지주재(제11.4조)
- 현행조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법률 제6730호, 2002.8.26)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대통령령 제17286호, 2001.6.3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11조(건설교통부령 제283호, 2001.6.30)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유지업, 자동차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 폐지계획: 없음.

